

NEWS LETTER

2024-09-02

Legal Issue

- 늘어나는 알고리즘 소송과
필수적인 알고리즘 검증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판단기준

MINWHO News

- 법무법인 민후,
'제5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개최



Legal Issue

늘어나는 알고리즘 소송과 필수적인 알고리즘 검증

김경환 대표변호사

최근(2024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을 이유로 약 1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을 검찰 고발하기에 이르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3가지 검색순위 노출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직매입상품 5만8658개, PB상품 5592개)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한 게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알고리즘이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2012~2020년 자사 스마트스토어 경쟁사들에 불리한 방식으로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부당하게 조정했다고 판단해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2023년 6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는 이유로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유사한 소송은 외국에도 있다. 호주의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는 여행 포털 트리바고의 알고리즘이 순수하게 가격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수수료도 고려해 상단 추천하는 것임에도 트리바고는 마치 가격만 비교해서 추천하는 것처럼 광고하였는 바, 이는 사기 또는 오인 표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위 소송들은 알고리즘 결과가 어느 정도 의도된 것인 반면,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가 의도된 것인지 모호한 경우의 소송도 존재한다.

테러 사고로 사망한 미국 유족들이 유튜브, 트위터 같은 온라인 플랫폼들의 알고리즘이 테러 관련 콘텐츠를 추천한 것이 이라크와 시리아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를 돕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2023년 5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수년 동안 IS 집단이 자신들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지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는 테러 공격을 지원했다고 간주하기 힘들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리고 2023년 10월 미국 41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 및 연방법원에 메타를 고소했는데 소셜미디어 회사 메타가 알고리즘 등을 이용해 청소년이 자사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중독되도록 유발했다는 주장이다. 이 주 정부들은 메타가 알고리즘, 알림 설정,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도 게시물을 계속 볼 수 있는 무한 스크롤 기능을 통해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을 유발하고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소장에 적시했다.

이들 소송은 알고리즘의 의도가 모호한 사안으로 결과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이 어떤 의도로 짜여졌는지도 입증돼야 하는 소송으로서 원고에게는 많은 법적 부담이 존재하는 틀림이 없다.

알고리즘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별 명령 구조를 의미하는데, 정보기술(IT) 시대 및 인공지능(AI) 시대에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경쟁, 권리의무, 법적 제재 등 개인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알고리즘에 의하여 순위나 경쟁에서 밀리기도 하고, 원하는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원하는 직업을 얻지 못할 수도 있으며,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비자 발급이 불허될 수도 있다.

알고리즘에 의해 원하지 않은 결과를 얻는 개인은 그 타당성을 법원의 소송을 통해 검증할 수밖에 없을 것인 바, 향후 알고리즘에 대한 법적 분쟁은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필자가 걱정하는 점은 알고리즘 설계자의 의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특정인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해야 하는 지인데, 알고리즘의 정당한 사용과 알고리즘의 남용을 구별짓는 알고리즘 검증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프로필 보기](#)

02-532-3425
oalmephaga@minwho.kr

Legal Issue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판단기준

원준성 대표변호사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소개

저작물의 동의 없는 이용이 언제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은 재판 등에서의 복제,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저작권재산권의 제한에 관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재산권이 제한되어야 할 모든 경우를 유형화하여 규정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저작권법은 제35조의5에서 저작권재산권 제한에 관한 일반적 성격의 규정으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그 판단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규정이니만큼 요건이 추상적이므로, 그 구체적 기준은 누적된 판례를 통해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그동안 저작권법 제35조의5 요건의 구체적 의미에 관해 상세하게 설시한 판례는 없었는데, 최근 그 기준을 비교적 자세히 판시한 판례가 있어 그 판례를 소개한다.

본 판례 사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를 그 홈페이지에 시험 종료 후에도 지속하여 공개하고 누구든지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 둔 행위가, 그 문제지에 인용된 저작물들의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제1심의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물이 인용되었고, 균등한 학습기회 보장과 시험의 투명한 관리라는 공익이 인정되며, 인용된 부분의 양적·질적 비중이 크지 않고, 저작물의 본래 목적과 달리 수험생의 학습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용되어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가 그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제2심과 대법원은 달리 보았다. 당초의 목적인 평가를 위한 시험문제에의 인용을 넘어, 시험의 전 과정이 종료된 후에도 시험 응시자 외 불특정 다수인이 언제든지 원하면 이를 내려받을 수 있는 상태로 게시하여 두는 행위는 정당한 이용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이러한 게시행위까지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2조)라거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대법원은 이러한 게시행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도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면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상세히 실시하였다. 즉 대법원은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제1호)』에 관하여는 그 이용이 원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을 나타내도록 변형한 것인지, 원저작물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목적과 성격을 가지는지, 원저작물을 변형한 정도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필요한 수준보다 더 높은 정도에 이르렀는지, 공익적이거나 비영리적인 이용인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제2호)』에 관하여는 원저작물이 사실적·정보적 성격을 가진 저작물인지, 공표되거나 발행된 저작물인지 등이 고려되고,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제3호)』에 관하여는 원저작물 전체를 기준으로 그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적인 비중이나 질적인 중요성이 낮은지, 이용자가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 것인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4호)』에 관하여는 저작물의 이용이 원저작물 또는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에 대한 현재 시장의 수요나 장래 개발될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는 통상적인 시장의 수요를 대체하거나 그 시장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없거나 적은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여러 SNS의 사용이 널리 일반화되며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게시물에 여러 유형으로 인용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데, 그러한 경우 저작권침해 판단에 항상 고려되는 것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인지 여부이다.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판시가 없어 판단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대법원 판시를 통해 그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원준성 대표변호사, 변리사

[프로필 보기](#)

02-538-3423
wonjs@minwho.kr

MINWHO NEWS

법무법인 민후, '제5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민후 고객 초청 세미나 '제 5회 신기술 경영과 법'

- 최신 전자금융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증권형 토큰 규제와 관련된 법적 이슈와 대응 방안 공유

| 일시 2024. 9. 27 (금) 오후 2시 ~ 4시

|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역삼동) 포스코타워 3층

| 주최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민후는 '신기술 경영과 법'을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신 전자금융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그리고 증권형 토큰 규제와 관련된 법적 이슈와 대응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변화하는 법적 환경에 대한 통찰을 나누고,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9/16(월)까지 이메일로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미나신청방법 및 일정 안내

- [세미나신청방법 및 일정 안내 자세히 보러가기](#) (클릭 시 바로 연결됩니다.)

시간	발표자	주제 및 내용
14:00~14:25	 양진영 변호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법적이슈와 대응방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이슈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14:25~14:50	 김경환 변호사	증권형 토큰에 대한 국내외적 규제와 대응방안 증권형 토큰 등이 국내외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고, 그에 관한 관련 규제 및 그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한다.
14:50~15:00	BREAK TIME	
15:00~15:25	 원준성 변호사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요와 이용자의 보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업 관리감독 및 이용자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사업자 영향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15:25~15:50	 현수진 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유권해석 및 자문사례 및 법 개정 이후의 대응방안 구법에 따른 유권해석 (금융감독원 법령해석 사례) 및 법무법인 자문사례, 개정법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고 사업자별 대응방향 및 준비사항을 안내한다.

| 안내 사항

- 세미나 참가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 공간상의 제약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다수 신청기업에 대해서 신청 현황에 따라 인원조정을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미나 관련 문의

- 법무법인 민후 (T) 02-532-3490 (E) marketing@minwh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포스코타워 역삼 11층 / 21층

Tel. +82-2-532-3483 Fax. +82-2-532-3486

www.minwho.kr



본 뉴스레터의 내용 또는 기타 법률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민후로 연락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민후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및 소식 자료로, 모든 법률적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내용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민후에 있으므로, 무단 배포, 복사, 게재를 금합니다.